

##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

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
2013년 4월 16일

안 성 시



1. 공 고 명 :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
2. 지정사유 :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
3. 대 상 지 : 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산1번지외 9개소(붙임 참조)
4. 공고기간 : 2013. 4. 16 ~ 5. 15(30일)
5. 이의신청 :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 소유자,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안성시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※ 주 소 :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(봉산동 31-3)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 
(전화 031-678-2571~2, 팩스 031-678-2569)
6. 지정예정일 : 2013. 5. 16(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)
7.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 : 붙임
8. 경과조치 :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

- 붙임
1.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1부.
  2.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부.
  3. 이의신청서 1부 끝.